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0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0.
3. 회부연월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 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생략)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³⁾.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개정안은 현재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함⁴⁾으로써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현재 시·군·구의회를 중심으로 일반임기제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이 부족한 상황이며⁵⁾,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휴직·면직 등에 따른 인력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⁶⁾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4)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함

5)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원 1,209명 중 295명이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이며, 군의회의 경우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60%를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 중임.

6) 노인만, 「의정제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쟁점과 발전 방안」, 2024, p.88-90.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신분불안, 업무 갈등 등으로 인해 정책지원관의 이직,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

윤정우·하병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4, p.35-56.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을 단순화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없고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 시 새로운 임용에 최소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임기제공무원 임명 시 장·단점>

구 분	내 용													
장점	☐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확보 가능 ※ 임기제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임용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임용분야</th><th style="width: 10%;">응시자격요건</th></tr> <tr>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정책지원관</td><td style="text-align: center;">6급</td></tr> <tr> <td>○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급</td></tr> <tr> <td>○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급</td></tr> <tr> <td>○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급</td></tr> <tr> <td>○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 <td colspan="2">※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입법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공업,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조사·분석 등 임용분야(정책지원관)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td></tr> </table> ☐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비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주로 집행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능력 개발유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	6급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입법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공업,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조사·분석 등 임용분야(정책지원관)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	6급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입법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공업,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조사·분석 등 임용분야(정책지원관)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단점	☐ 인력공백 시 탄력적 대응 한계 ※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①인사위원회 의결→②공고→③경력경쟁채용시험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 임기에 따른 업무 연속성 한계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최대 5년. 다만, 해당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 임기제공무원 충원의 어려움 ※ '23기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률(현원/정원): 87% (광역: 98%, 기초: 83%)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박순종, 「정책제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노인만 「의정제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쟁점과 발전 방안」, 이병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관리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바탕으로 작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용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23.12.31.기준)					신분	
			계	직급				일반직	임기제
				6급	7급	8급	9급		
합계		1,843	1,604	307	1,079	124	94	313	1,291
서울	광역	56	55	55	-	-	-	-	55
	기초	207	188	-	170	18	-	-	188
부산	광역	23	23	9	14	-	-	4	19
	기초	86	70	1	59	9	1	33	37
대구	광역	16	16	10	6	-	-	8	8
	기초	62	58	-	55	1	2	2	56
인천	광역	20	19	19	-	-	-	-	19
	기초	59	57	-	55	1	1	6	51
광주	광역	11	11	11	-	-	-	-	11
	기초	33	33	-	33	-	-	-	33
대전	광역	11	11	11	-	-	-	-	11
	기초	31	27	-	21	-	6	17	10
울산	광역	11	11	8	3	-	-	3	8
	기초	24	21	-	21	-	-	2	19
세종		10	10	10	-	-	-	-	10
경기	광역	78	77	77	-	-	-	-	77
	기초	222	206	-	184	12	10	40	166
강원	광역	24	24	24	-	-	-	-	24
	기초	80	62	-	31	19	12	39	23
충북	광역	17	17	17	-	-	-	3	14
	기초	66	53	1	44	7	1	21	32
충남	광역	24	24	-	24	-	-	-	24
	기초	83	72	2	60	3	7	18	54
전북	광역	20	20	10	10	-	-	-	20
	기초	95	76	-	72	2	2	7	69
전남	광역	30	30	-	30	-	-	-	30
	기초	118	98	-	48	24	26	54	44
경북	광역	30	25	21	4	-	-	-	25
	기초	134	74	1	58	5	10	27	47
경남	광역	32	32	20	12	-	-	-	32
	기초	130	104	-	65	23	16	29	75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비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활한 인력 충원 및 신분 안정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이며, 일부 의회에서 일반임기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직(비임기제) 채용
배제 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